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번호		
	승인일자		
	설계변경 사유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각 3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설계승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